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나2017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나201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 변호사 함영주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 변호사 고병수

변론 종결2021. 11. 5.

판결 선고2021. 12. 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3,0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각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6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가 2019. 11. 16. 원고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합의(갑 제10호증)를 하면서 합의 제16조로 "회사 실사 시 합의된 기금액 사용범위 이상의 금액 발견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D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721,18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5쪽 6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업무를 일부나마 수행하였던 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 중 제9조에서 피고의 퇴직금을 1억 원 이내에서 인정하기로 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 지급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로서는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대표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와 업무 수행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D이 원고 사내이사인 피고 명의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대표자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원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갑 제9호증) 제9조에서 피고의 퇴직금을 1억 원 이내에서 인정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가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은 합의 제16조에서 지칭하는 "회사 실사 시 합의된 기금액 사용범위" 이내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심연수

판사유현종

판사김무신